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516
------------	-------

발의연월일 : 2019. 10. 31.

발 의 자 : 윤관석 · 강훈식 · 이학영

박 정 · 이후삼 · 이재정

조정식 · 박찬대 · 김정우

윤후덕 · 안호영 · 임종성

김철민 의원(13인)

제안이유

KT 아현동 통신구 화재,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여의도 공사장 싱크홀 발생, 서대문 상수관 파열 등 지하시설물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하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과 소관 부처의 장에게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과 개선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정확도 개선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확도 개선요구를 하도록 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정확한 지하공간정보구축을 위하여 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노력하도록 함(안 제42조제3항 신설).
- 나.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소관 부처의 장은 정확도 개선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 또는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2조제5항 신설).
-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 개선 지원을 위해 전담기구를 지정·운영 하도록 함(안 제42조제6항 신설).
-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과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정확도 개선요구를 하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 바. 지하개발 또는 주요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활용하도록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목 중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등”을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제공 · 활용 등”으로 한다.

제42조 제3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정확한 지하공간정보구축을 위하여 개선계획 수립 등 노력을 하여야 하며 개선된 지하공간정보를 소관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소관 부처의 장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지하정보를 수집 · 관리하여야 한다.

⑤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소관 부처의 장은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소요되는 자금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지정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과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확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4조의 제목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지원)”을 “(지하정보통합체계의 지원 및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지하개발 또는 주요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하공간통합지도구축 지역에 대하여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제공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주요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장 <u>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등</u>	제6장 <u>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제공·활용 등</u>
제42조(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①·②(생략) <u><신 설></u>	제42조(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①·②(현행과 같음) ③ <u>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정확한 지하공간정보구축을 위하여 개선계획 수립 등 노력을 하여야 하며 개선된 지하공간 정보를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④ <u>지하정보관리기관의 소관 부처의 장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지하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u> ⑤ <u>지하정보관리기관의 소관 부처의 장은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소요되는 자금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u> ⑥ <u>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u>
<u><신 설></u>	
<u><신 설></u>	

<신 설>

③ (생 략)

제43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 운영)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제4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
지원) ① · ② (생 략)

<신 설>

다.

⑦ 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3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과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확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지원
및 활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지하개발 또는 주요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지역에 대하여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제공받아 활용하여 야 한다. 주요 굴착을 수반하

	<p><u>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u></p>
<u>③</u> (생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